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□ **개정이유**

○ 민선8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만들고, 소통홍보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□ **주요내용**

○ 시장 직속 소통홍보관을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명시(안 제3조제2항)

□ **개정규칙안:** 별첨

□ **신·구조문대비표:** 별첨

□ **관계법령발췌서:** 별첨

○「지방공무원법」제29조의4제1항

○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제2조

□ **관련사업계획서:** 해당없음

□ **예산수반사항:** 해당없음

□ **사전예고 결과:** 예정

○ 입법예고 기간: 2023. 1. 13. ~ 2023. 1. 23.(10일간)

※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

□ **조례·규칙 심의 결과:** 예정

□ **기타 참고사항:** 별첨

○ 현행 규칙

○ 성별영향평가, 부패영향평가, 규제영향분석 결과서

파주시 규칙 제 호

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미래전략관과 첨단도시정보과장”을 “소통홍보관, 미래전략관 및 첨단도시정보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부서		행정지원과 ☏940-4123
입안자	행정지원과장	이 학 현
	인 사 팀 장	임 공 빈
	담 당 자	이 현 수

□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직급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미래전략관과 첨단도시정보과장은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고, 감사관은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한다. ③ (생 략) ④ (생 략) ⑤ (생 략) ⑥ (생 략)	제3조(직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소통홍보관, 미래전략관 및 첨단도시정보과장은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 ⑥ (현행과 같음)

□ 관계법령발췌서

ㅇ「지방공무원법」

제29조4(개방형직위)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, 「지방자치법」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·규칙에 따라 시·도는 5급 이상, 시·군·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.

ㅇ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

제2조(개방형직위의 지정)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(이하 “개방형직위”라 한다)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·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,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,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□ 기타 참고사항: 현행 규칙

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담당관 및 국·소·본부장은 시장·부시장을 보좌하고, 과장은 국·소·본부장을 보좌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3조(직급) ① 파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의 국장과 담당관·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미래전략관과 첨단도시정보과장은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고, 감사관은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한다.

③ 직속기관의 장 및 과·소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으며, 파주보건소장은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고, 농업기술센터 하부조직으로 읍·면·동에 농업인상담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사업소의 본부장 및 관·과·소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.

⑤ <삭제>

⑥ 읍면동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.

제4조(사무분장) 본청의 담당관·과, 직속기관·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.

제5조(직종별·직급별·직렬별 정원) ①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·

직종별·직급별·직렬별(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) 정원은 별표 7과 같다. 다만,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별도로 표시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원 총계 중 한시기구의 부서와 직급·직렬 및 운영시한을 별표 8과 같이 한다.

제6조(정원의 배정) 정원관리기관별 보좌·보조기관에 두는 정원의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6.3.2. 규칙 제578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6.8.5. 규칙 제586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2.7 규칙 제615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6.30 규칙 제627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2.9 규칙 제635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8.12.28. 규칙 제650호)

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9.5.10. 규칙 제658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12.27. 규칙 제678호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12.28. 규칙 제706호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7.13. 규칙 제724호)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파주시 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호 중 “읍·면·동 및 출장소”를 “읍·면·동”으로 한다.
제26조제2항 중 “읍·면·동 및 출장소는”을 “읍·면·동은”으로 한다.
② 파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8항 중 “출장소, 읍·면·동”을 각각 “읍·면·동”으로 하고, 제2조제2호, 제6조제2항제2호,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2항제2호 중 “사업소, 출장소”를 각각 “사업소”로 한다.
제25조제1항 중 “출장소, 사업소”를 “사업소”로 한다.
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출장소, 읍·면·동별”을 “읍·면·동별”로 한다.
③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제2호 중 “사업소, 출장소”를 “사업소”로 한다.
④ 파주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.
⑤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출장소, 의회사무국”을 각각 “의회사무국”으로 한다.
제15조제2호가목 중 “직속기관·읍·면·동·사업소·출장소·의회사무국장”을 “직속기관·읍·면·동·사업소·의회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⑥ 파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 중 “읍·면·동·출장소”를 “읍·면·동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2호 중 “읍·면·동·출장소장”을 “읍·면·동장”으로 한다.

⑦ 파주시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시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”를 “시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담당관·과장·직속기관장·사업소장·출장소장”을 “담당관·과장·직속기관장·사업소장”으로 한다.

부칙(2021.12.31. 규칙 제733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12. 28. 규칙 제748호)

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□ 기타 참고사항: 성별영향평가 결과서

시민중심 더큰파주

파 주 시

수신 행정지원과장
(경유)
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(2023A경기파주002)

1. 행정지원과-977(2023.01.09)호와 관련합니다.

2. 귀 부서에서 제출한 「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 개정안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,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여 성 가 족 과 장 권예자

여성정책전문위원 권문영	여성정책팀장 김지연	여성가족과장 권예자 2023. 1. 11.

협조자

시행 여성가족과-1028 (2023. 1. 11.) 접수 행정지원과-1350 (2023. 1. 11.)

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, 복지동 1층 여성가족과 (아동동) / http://www.paju.go.kr

전화번호 031-940-8684 팩스번호 031-940-4419 / myjihee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□ 기타 참고사항: 부패영향평가 결과서

시민중심 더큰파주

파 주 시

수신 행정지원과장
(경유)
제목 「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회신

1. 행정지원과-967(2023. 1. 9.)호와 관련됩니다.
2. 「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」 제9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.

□ 부패영향평가 결과

관리번호	주관부서	자치법규명	평가결과	비고
2023-02	행정지원과	「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	원안동의	

붙임 1. 결과통보서 1부.
2. 규칙안 1부. 끝.

감 사 관

주무관 이종은 청렴감사팀장 윤주현 감사관 유대승 2023. 1. 11.
협조자
시행 감사관-405 (2023. 1. 11.) 접수 행정지원과-1404 (2023. 1. 11.)
우 10813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, 감사관실 (아동동) / http://www.paju.go.kr
전화번호 031-940-4084 팩스번호 031-940-4089 / whsl3719@korea.kr / 비공개(5)

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관리번호	2023-02		
자치법규명	「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		
평가담당부서	감사관	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	복지7급 이종은
주관부서	행정지원과	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	행정7급 이현수
평가결과 통지일	2023. 1. 11.		
통보내역	**원안동의**		
관련조문	검토결과		조치사항
-	-		-

□ 기타 참고사항: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

시민중심 더큰파주

파 주 시

수신 행정지원과장
(경유)
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회신 [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(일부개정안)]

행정지원과-968(2023.1.9.)호와 관련하여 「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(안)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.

붙임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서 1부. 끝.

의 회 법 무 과 장

주무관	박지영	규제개혁통계 팀장	신동혁	의회법무팀장	대결 2023. 1. 10. 이병호	의회법무과장	전결
협조자							

시행 의회법무과-425 (2023. 1. 10.) 접수 행정지원과-1247 (2023. 1. 10.)

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(아동동) / http://www.paju.go.kr

전화번호 031-940-4171 팩스번호 031-940-4099 / cherrybloom@korea.kr / 비공개(5)

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

1. 자치법규명	**「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**(일부개정안)	
2. 소관부서	부서명	행정지원과
	담 당	팀장 임공빈 담당자 이현수
3. 관련법령 등	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4제1항 ○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	
4. 주요골자	○ 시장 직속 소통홍보관을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명시(안 제3조제2항)	
5. 심사의견	**○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** - **「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** 일부개정은 파주시 행정기구의 개방형직위 지정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-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**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.**	
6. 심사담당자	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(4171)	